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 검 토 보 고 서



2025. 11.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1. 28.

기획재경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기획전략과장)
- 제출일자: 2025. 11. 14.(금)
- 회부일자: 2025. 11. 14.(금)
- 검토기간: 2025. 11. 17.(월) ~ 11. 21.(금)

## 2. 개정이유

- 달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와 區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국” 신설 및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신 설: 경제환경국
  - 명칭변경
    - 기획경제국 → 기획전략국
    - 복지증진국 → 복지국
    - 문화환경국 → 문화교통국
- “과” 의 신설 및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신 설: 미래전략과(기획전략국), 가족정책과(복지국)

- 명칭변경
  - 기획전략과 → 기획예산과
  - 일자리지원과 → 일자리청년과
  - 청소과 → 자원순환과
  - 아동가족과 → 아동친화과
  - 행복나눔과 → 행복돌봄과
- 이 관
  - 일자리청년과, 경제지원과(舊 기획경제국 → 경제환경국)
  -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과(舊 문화환경국 → 경제환경국)
  - 위생과(舊 복지증진국 → 경제환경국)
- 분장사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신설: “돌봄 통합지원” 업무(행복돌봄과)
  - 이 관
    - “성과평가” 업무(청렴감사실 → 기획예산과)
    - “국제교류 및 외국인 주민지원·의회협력” 업무(총무과 → 기획예산과)
    - “정책개발 및 미래전략 수립·인구정책·지속가능발전·기후변화 대응·규제개혁·정부혁신” 업무(舊 기획전략과 → 미래전략과)
    - “여성가족친화·결혼장려·출산장려” 업무(舊 아동가족과 → 가족정책과)
    - “주거복지” 업무(舊 행복나눔과 → 가족정책과)
- 그 밖에 분장사무 문구 정비(명시화 등)
  - 조사 및 환경순찰(청렴감사실), 경관디자인(도시디자인과), 정원(공원 녹지과), 정신건강·질병관리(보건행정과) 등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등(안 부칙 제2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비용추계서: 비해당

○ 입법예고(2025. 10. 13. ~ 11. 3.)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과 신설 등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구 본청 직제를 개편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

- 구 본청 직제를 기존 ‘5국 1실 28과 139팀’ 에서 ‘6국 1실 30과 140팀’ 으로 개편하는 것이며, 조정 내역은 경제환경국 신설, 미래 전략과, 가족정책과 등 2개 과 신설, 조사팀, 규제혁신팀, 돌봄정책팀, 돌봄사업팀 등 4개 팀 신설, 2개팀을 1개팀으로 통합한 나눔봉사팀과 별빛캠프팀, 폐지되는 대외협력팀을 포함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기획경제국을 기획전략국으로 변경하여 기획예산과·미래 전략과·디지털정보과 및 홍보미디어과를 두고, 15개 팀의 분장사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의2는 행정교육국에 총무과·종합민원과·회계과·세무과·징수과 및 평생교육과를 두고, 32개 팀의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경제환경국을 신설하여 일자리청년과·경제지원과·자원 순환과·기후환경과 및 위생과를 두고, 21개 팀의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의2는 복지증진국을 복지국으로 변경하여 복지정책과·어르신 장애인과·가족정책과·아동친화과 및 행복돌봄과를 두고, 22개 팀의 분장사무를 명시하였고,

- 안 제7조의3은 문화환경국을 문화교통국으로 변경하여 문화관광과·체육청소년과·교통행정과 및 주차관리과를 두고, 14개 팀의 분장 사무를 명시하였음.

◇ 행정기구 조직개편 개요: 국(+1), 과(+2), 팀(+1)

구분	구분청	보건소	동	의회사무국
기존	5국 1실 28과 139팀	1소 2과 1지소 13팀	23동 53팀	1국 4전문위원 4팀
개편	6국 1실 30과 140팀	-	-	-

◇ 행정기구 조직개편 세부내용

국명	부서명	비고
청렴감사실	조사팀(신설)	1실 3팀
기획전략국 (←기획경제국 명칭변경)	기획예산과(←기획전략과 명칭변경, 5팀→4팀) 미래전략과(신설, 규제혁신팀 분리 신설, 3팀), 디지털정보과(5팀), 홍보미디어과(3팀)	5과 21팀 → 4과 15팀
행정교육국	총무과(5팀→4팀), 종합민원과(4팀), 회계과(3팀), 세무과(7팀), 징수과(5팀), 평생교육과(9팀)	6과 33팀 → 6과 32팀
경제환경국 (신설)	일자리창년과(←일자리지원과 명칭변경, 기획경제국에서 이관, 4팀), 경제지원과(←기획경제국에서 이관, 4팀), 자원순환과(←청소과 명칭변경, 문화환경국에서 이관, 3팀), 기후환경과(←문화환경국에서 이관, 5팀), 위생과(←복지증진국에서 이관, 5팀)	5과 21팀
복지국 (←복지증진국 명칭변경)	복지정책과(6팀), 어르신장애인과(4팀), 가족정책과(←아동가족과에서 분리 신설, 4팀), 아동친화과(←아동가족과 명칭변경, 7팀→4팀), 행복돌봄과(←행복나눔과 명칭변경, 돌봄정책팀, 돌봄사업팀 신설 4팀)	5과 26팀 → 5과 22팀
문화교통국 (←문화환경국 명칭변경)	문화관광과(5팀→4팀), 체육청소년과(3팀), 교통행정과(4팀), 주차관리과(3팀)	6과 23팀 → 4과 14팀
도시창조국	도시디자인과(6팀), 공원녹지과(5팀), 안전도시과(5팀), 건설과(5팀), 건축과(7팀), 토지정보과(5팀)	6과 33팀

-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 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2024년 3월 29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구 규모별 실·국의 설치기준이 폐지됨으로써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라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있으면 국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번 행정기구 개편은 국·부서의 신설·명칭 변경, 연계성을 고려한 업무 재배치 등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전문화·세분화 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만, 조직 개편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 【 관 계 법 령 】

##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 현 행 조 례 】

## □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실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 라 한다) 본청의 국장·실장·과장 및 보건소의 과장·지소장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장·과장 및 지소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보건소장 및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 2 장 구 분 청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청렴감사실·기획경제국·행정교육국·복지증진국·문화환경국 및 도시창조국을 둔다.

제4조 <삭제 2023. 10. 11.>

제5조(청렴감사실) 청렴감사실장은 청렴·조사·감사·확인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의 2 <삭제 2015. 7. 31.>

제5조의 3 <삭제 2017. 12. 29.>

제6조(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전략과·디지털정보과·홍보미디어과·일자리지원과 및 경제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4. 7. 1.)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인구 및 혁신·예산·공모·정책개발 및 미래전략 수립·지속가능발전·기후변화대응·규제개혁법무 등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및 스마트도시 조성·정보빅데이터·통계·전산운영·통신·통합관계 등에 관한 사항
3. 홍보기획·언론지원·미디어소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창출·취업지원·사회적경제·청년정책 등에 관한 사항
5. 경제정책·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유통지원·동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교육국)** ① 행정교육국에 총무과 · 평생교육과 · 종합민원과 · 세무과 · 징수과 및 회계과를 둔다.

② 행정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 자치행정 · 의회협력 · 국제교류 · 외국인주민 지원 · 인사교육 ·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 창의교육지원 · 평생학습관 운영 · 독서진흥 · 도서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민원행정 · 민원처리 · 여권 · 가족관계등록 · 민원분실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관리 · 시세 · 구세 · 주민세 · 지방소득세 · 세무조사 · 과포 등에 관한 사항
5. 세입총괄 · 체납정리 · 체납처분 · 세외수입 ·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항
6. 회계 · 복식부기 ·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복지증진국)** ① 복지증진국에 복지정책과 · 어르신장애인과 · 아동가족과 · 행복나눔과 및 위생과를 둔다.

② 복지증진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 · 기초생활보장 · 통합조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정책 · 노인시설 · 장애인복지 · 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가족친화 · 아동친화 · 출산장려 ·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사건조사 · 결혼장려 · 보육 · 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항
4. 나눔협력 · 자원봉사 · 희망이음 · 현장복지서비스 · 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 · 위생지도 · 영상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의3(문화환경국)**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관광과 · 체육청소년과 · 교통행정과 · 주차관리과 · 청소과 및 기후환경과를 둔다.

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및 문화재단 관리 · 관광진흥 · 선사문화 · 별빛캠프 등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 · 체육시설 · 청소년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행정 · 교통시설 · 운수행정 · 교통사범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주차기획 · 교통지도 · 차량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행정 · 재활용 · 폐기물 등에 관한 사항
6. 환경보호 · 대기보전 · 에너지관리 · 수질보전 · 환경허가 등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창조국)** ① 도시창조국에 도시디자인과 · 공원녹지과 · 안전도시과 · 건설과 · 건축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창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경관 관리·도시재생·도시계획·도시정비·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산림휴양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기획·재난관리·자연재해·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4. 건설행정·도로·하수·하천·도로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건축지도·건축·시설건립·재개발·건축허가·공동주택관리·건축안전 등에 관한 사항
  6. 토지행정·지적·지적재조사·부동산·지가조사·주소정보 등에 관한 사항
- 제8조의2 (삭제 2007. 4. 5.)

### 제 3 장 직속기관

#### 제1절 보건소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보건소장 등)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과장 및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 중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사무를 제외한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보건행정·의약관리·감염예방·보건검진 등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모자보건·건강돌봄·치매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③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 4 장 사업소

제1절 (삭제 2013. 12. 23.)

## 제 5 장 동

제18조(설치) ①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행정운영상의 동(이하 “동“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동장) 동에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운영 및 복지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